

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 규정

제1조 (목적) 본 규정은 학교법인 호서학원(이하 “법인”) 정관에 명시된 개방이사추천위원회(이하 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 추천위원회 위원은 7인으로 하되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호서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
2.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
3. 대성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
4. 대성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
5.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3인

제3조 (운영 및 임기) ①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두며, 비상설 기구로 운영한다.

②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선임된 날로부터 개방임원 선임대상자 추천을 마친 날까지로 한다.

제4조 (위원장 등) ①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

②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.

③ 추천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5조 (추천위원회 기능)

① 추천위원회는 법인으로부터 개방이사 추천을 요구받았을 때 개방이사 대상인원의 2배수를 선정하여 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추천위원회는 법인으로부터 개방감사 추천을 요구받았을 때 개방감사 대상인원의 단수를 선정하여 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6조 (회의)

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 (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) 추천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며, 위원장은 회의록을 교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.

제8조 (비밀유지) 추천위원회 위원 및 관계 교직원은 직무상 알게된 사항이나 대학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9조 (간사) 추천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대학평의원회 간사가 겸임한다.

제10조 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, 사립학교법 시행령, 법인정관, 본교 학칙 및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(2018. 3. 2)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